

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 3187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03. 02.
제출자 김현주 의원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3년 3월 2일 김현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개정이유

- 연구활동 계획 변경 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, 의원 임기 만료 연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명시하는 사항임

3. 주요내용

-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5조)
- 의원 임기 만료 연도의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기한 규정 신설 (안 제11조제2항)

4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, 의원 임기 만료 연도의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기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